

## 안내 말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림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 지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회와 교원위원회, 지역위원회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회는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청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인원	자 객
학부모위원회	6명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회	4명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회	2명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계	12명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설치 목적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교육위원 및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 운영위원회 권리와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종묘사향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위원회 및 임기

-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이며 임기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회와 교원위원회는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회는 3월 30일까지 선출합니다.

#### 위원회 자격 및 경지 평가

- 자격
  - 학부모위원회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 위원 : 익산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법률·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익산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겸할 수 없습니다.